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8호 2020. 8. 7.(금)

선	기 관 의 장
람	

입 법 예 고

- 고성군 공고 제2020-1251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0-4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5

고 시

- 고성군 고시 제2020-17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평부천] 27
- 고성군 고시 제2020-174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8
- 고성군 고시 제2020-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에스**건설(주)] 30

회									
람									

고성군 공고 제2020-1251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7.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조례의 설치·운용 목적(안 제1~2조)
- 2)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3조~제4조)
- 3)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안 제5조~제12조)
- 4)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13조)
- 5)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 2) 전화: (055)670-2062, 팩스: (055) 670-20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 [전화: (055)670-206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 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고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기금별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4. 통합계정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 2. 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붙임3

현행 조례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일 : 2017.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 5호의 경우에는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기타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적립금은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립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적립금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적립금운용관 : 재정안정화적립금 담당부서장
2. 적립금출납원 : 재정안정화적립금 담당

② 적립금운용관과 적립금출납원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7.1.26. 조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이 없을 시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0-4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7.

고 성 군 수

1. 제정 이유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대상자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은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한다(안 제6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357-900 고성군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55-670-4262, Fax 670-4219) 또는

고성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goseo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담당(☎ 055-670-42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영세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이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고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 결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벼 육묘 지원
- 2.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고령 영세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4.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소:

(서명)

20 년 『

』 신청대장

읍면 대표 0 0 0 (서명 또는 인)

연번	참 여 농 가				벼재배 면적(m ²)	품종명	사업량 (상자)	서명(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벼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면적 기재

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사업) 단서

1. 제4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5조: 벼 육묘 지원,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 등

나. 비용발생 요인: 벼 육묘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80세 이상으로 벼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재배하는 농업인

2) 사업규모: 3,500원(상자) × 300상자/1ha × 623ha × 50% = 327,075천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327,075	327,075	327,075	327,075	327,075	1,635,375
세입	군비	327,075	327,075	327,075	327,075	327,075	1,635,375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 2024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재원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327,075	327,075	327,075	327,075	327,075	1,635,375
조달	기 타	-	-	-	-	-	-
	소 계	327,075	327,075	327,075	327,075	327,075	1,635,375

작성자: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0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130524호(수산업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1.3.9.,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7.3.21, 2018.2.21] [시행일 2019.1.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1] [[시행일 2020.8.12.]]

고성군 고시 제2020-172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9-63호로 고시된 소하천구역 결정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마암면사무소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9.

고 성 군 수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시 작 하 는 지 점	끝 나 는 지 점	소 하 천 길이(m)	소 하 천 구 역	
낙동강 남해	평 부 천	당초	마암면 삼락리 1033	마암면 삼락리 35-6	2,455	40,264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정정	마암면 삼락리 1033	마암면 삼락리 35-6	2,420 (감35m)	40,405 (증141㎡)	

첨부서류: 1. 지형도면고시 도면 1부
2. 평부천 하천구역 변경 지번조서 1부

고성군 고시 제2020-174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31.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 전 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무량리 233	고성읍 무량로 163-44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무량산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고성읍 덕산리 산57-3	고성읍 덕산로 150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덕산리)을 이용하여 덕산로로 명명	
3	삼산면 병산리 300	삼산면 병산1길 53-66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병산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4	영오면 연당리 360-11	영오면 영희로 687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5	영오면 오서리 1099	영오면 대가로 2161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6	회화면 어신리 산65	회화면 봉오로 625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회화면 봉동리와 진전면 오서리를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7	하이면 월흥리 264	하이면 월흥5길 85-3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월흥리)을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8	대가면 유흥리 294-5	대가면 암전1길 29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암전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9	구만면 광덕리 565	구만면 광덕4길 55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구만면광덕리)을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10	고성읍 송학리 238-112	고성읍 동외로 200-1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동외리)을 이용하여 동외로로 명명	
11	대가면 최정리 608-5	대가면 대가로 494-64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12	회화면 어신리 328	회화면 회진로 635-1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회화면과 창원시 진전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13	하이면 와룡리 40-1	하이면 와룡1길 441-175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하이면와룡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4	하이면 월흥리 98-8	하이면 월흥5길 99-1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하이면월흥리)을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15	회화면 삼덕리 1012	회화면 배둔공단길 39-35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배둔공단지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16	마암면 화산리 888	마암면 도전1길 114-55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마암면도전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7	거류면 가려리 38	거류면 가려5길 130	2020.07.3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가려리)을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 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건물번호			
1	고성읍	동외로	200-1	2020. 07.31.	건축물대장 말소	
2	고성읍	동외로198번길	3	2020. 07.31.	건축물대장 말소	
3	고성읍	동외로198번길	5	2020. 07.31.	건축물대장 말소	

고성군 고시 제2020-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8. 3.

고 성 군 수

1. 변경허가개요

가. 허가번호: 제2017-18호(2017.07.06.)

나. 사 업 명: 고성하이화력1,2호기 건설공사 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임시도로 개설

다. 신 청 인: 에스**건설(주) 대표이사 안*현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마.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점 용 자	에스**건설(주) 대표이사 조*행	에스**건설(주) 대표이사 안*현
점용장소	하이면 덕호리 784-2(705답 인근)	변경없음
면 적	1,908㎡	변경없음
목 적	고성하이화력1,2호기 건설공사 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임시도로개설	변경없음
기 간	2017.07.06. ~ 2020.07.30.	2017.07.06. ~ 2022.07.30.
변경사유	기간연장	

2. 허가관련 서류 및 도면: 별도 비치(고성군 안전관리과)

3. 문 의 처: 고성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자(☎055-670-2764)